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제 1913 호 1995. 7. 31.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판	기 관 의 장

- 규 칙
제 2706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3
- 고 시
제 1995-217 호 사료성분등록 3
- 공 고
제 1995-206 호 1995년도하반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시행계획공고 4
- 구 고 시
제 1995-26 호 하천접용허가(마포) 10
제 1995-39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서대문) 10
제 1995-39 호 하천접용허가(강남) 10
제 1995-47 호 도시계획사업(고척1동~고척국교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 11
제 1995-25 호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결정및변경
결정에따른지적승인(송파) 11
제 1995-3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동) 11

(이면계속)

공 보 관											

☼ 서울특별시

0197

제 1995-32 호 도시계획사업(봉천동62-35~63-103간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관악) 12

제 1995-66 호 도시계획사업(월곡1동84-106가각경비)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13

제 1995-65 호 도시계획사업(돈암동48주변도로)실시계획인가(성북) 14

제 1995-30 호 도시계획사업(봉천동41-861~45-9간도로)실시계획인가(관악) 15

제 1995-27 호 도시계획사업(중동79~54간도로)실시계획인가(마포) 17

제 1994-31 호 도시계획사업(신림1동412-319~신림3동610-290간도로)
 실시계획인가(관악) 19

제 1995-51 호 도시계획사업(성수1가동356~성수2가동375간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성동) 20

● 구 공 고

제 1995- 65 호 도시계획사업(시의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일부시설변경)
 완료(광진) 20

제 1995-153 호 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성동) 21

제 1995-186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성북) 22

제 1995-250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공람공고(서초) 23

제 1995-162 호 전문건설업면허양도인가(관악) 23

제 1995-18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23

제 1995-133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동대문) 24

제 1995-196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24

제 1995-150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중구) 25

제 1995-161 호 도시계획사업(신림12동주거환경개선지구전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관악) 26

● 민 사 발 령

규 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5. 7. 31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㉔

●서울특별시규칙제 2706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제란 정원 "1897"을 "1898"로 하고, 별정직란 정원 "71"을 "72"로, 정원내용 중 "4급상당 1: 비서관 1"을 "4급 상당 2: 비서관 1, 홍보요원 1"로 한다.

〈별표 3-11〉 청소년직업전문학교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제란 정원 "60"을 "59"로 하고, 별정직란 정원 "32"를 "31"로, 정원내용중 "6급상당 14: 교육훈련교사 14"를 "6급상당 13: 교육훈련교사 13"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

등록사료(1종) :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37	수입 배합 사료	젓먹이 돼지 사료	체중 5~10kg 미만	17.0% 이상	2.0% 이상	0.6% 이상	0.4% 이상	4.0% 이하	8.0% 이하

2. 등록업체명 : (주)이지시스템

용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민선시장체제 출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책의 홍보·여론의 수렴 등 홍보·보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2. 주요골자

가. 홍보1담당관 홍보요원 1명 증원 (별표1-1)

나.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육훈련교사 1명 감축(별표3-11)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995-217 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합 및 단미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같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7. 31

서울특별시장

1. 등록업체명 : 밀테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3

대표자 : 이 현 범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대 표 자 : 차 원 철

등록사료(1종) : 독일에서 수입

등 록 번 호	사료의 종 류	사료의 명 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 료 의 성 분 량					
				조단백	조지방	수 분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38	수입 단미 사료	발효사료 6호 (나부포스 5000)	배합사료 원료용	20.0% 이 상	-% 이 상	10.0% 이 하	-% 이 상	5.0% 이 상	8.0% 이 하

3. 등록업체명 : 상륙종합상사

5가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대 표 자 : 성 현 경

등록사료(3종) : 미국에서 수입

등 록 번 호	사료의 종 류	사료의 명 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 료 의 성 분 량					
				조단백	전조지방	수 분	조섬유	조회분	
서울-839	수입 단미 사료	알팔파 큐브1 (1B)	가축 조사료용	12.0% 이 상	자연전조	12.0% 이 하	18.0% 이 상	15.0% 이 하	
서울-840	수입 단미 사료	알팔파 (GDA)	가축 조사료용	16.0% 이 상	자연전조	12.0% 이 하	18.0% 이 상	12.0% 이 하	
서울-841	수입 단미 사료	알팔파 큐브2 (1A)	가축 조사료용	15.5% 이 상	자연전조	12.0% 이 하	18.0% 이 상	12.0% 이 하	

4. 등록업체명 : 풍성상역(주)

대 표 자 : 강 대 석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2

등록사료(1종) : 스페인에서 수입

등 록 번 호	사료의 종 류	사료의 명 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 료 의 성 분 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42	수입 배합 사료	육성 광어용 1호 사료	생후 3개월부터	51.0% 이 상	10.5% 이 상	1.85% 이 상	1.2% 이 하	1.5% 이 하	12.0% 이 하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06호

1995년도하반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공고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하반기(1차, 2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7. 31

서울특별시장

1. 명예퇴직대상

2급이하 일반직·지방소방정감이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

제정일 현재 20년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5급이상(연구·지도관 포함)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와 6급이하 및 기능직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

2. 명예퇴직신청

가. 신청기간(본기 1회, 4급이상은 수시 가능)

- 1차 : 95. 8. 21~8. 26(명예퇴직예정일 9월말)

- 2차 : 95. 11. 21~11. 27(명예퇴직예정일 12월말)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명예퇴직사직원과 함께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

3. 명예퇴직대상자의 제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요구 중인 자

나.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인 자

다. 명예퇴직예정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2조(명예퇴직대상자의 요건)에 열거한 공무원(경력직)으로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퇴직시에 재직 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는 제외

4. 명예퇴직자 대상자의 심사 및 결정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퇴직우대

가. 명예퇴직 수당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내 지급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

10년초과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 특별승진자의 퇴직당시는 특별승진직점임.

나. 특별승진 및 표창 : 지방공무원법 제 39조의3 제1항제4호(단, 승진임용제한을 받는 자 제외)

6. 기타사항

가. 본인의 자필사직원을 확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비위조사 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14484호 94. 12. 31) 및 총무처예규 제267호(93. 11. 15)참조(국가공무원법 95. 7. 19자 관보 13066호 참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기재상 주의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① 소 속		② 공 무 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③ 직 급 또 는 등 급	
④ 성 명	한 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⑥ 주 소	□□□-□□□		
⑦ 전 화 번 호 (자택)		⑧ 근 속 년 수	년 월 정	⑨ 년 일	년 월 일
⑩ 정 년 구 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 수 당 청 구 액			
⑫ 정 년 잔 여 기간(수당지 급대상기간)	년 월	⑬ 산 출 내 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 : 1. 명예퇴직원 1부
2. 명예퇴직자 요진심사서(소속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확인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199
신 청 인 (인)

※ ⑭ 인 사 확 인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9.
(소속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명예퇴직사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자필)

19 년 월 일

위 원 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1. 징계의결 요구사항에 있지 않음
-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지 않음
- 3. 수사기관에 비위조사중에 있지 않음
- 4.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자가 아님
- 5. 면직사유 :

확인사람

위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	--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해당없음
	징계청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해당없음
	명예퇴직대상공무원으로 계속근무기간 5년 미만인지 여부	해당없음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해당없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중인지 여부	해당없음
	비위관련 연대책임자인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인지 여부	해당없음

조사작성 및 확인자

199 년 월 일

기관명 직위(주무과장) 직급 성명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기재상 주의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① 소 속		② 공 무 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직 급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③ 직 급 또는등급	
④ 성 명	한 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⑥ 주 소	□□□-□□□		
⑦ 전 화 번 호 (자 택)		⑧ 근 속 년 수	년 월	⑨ 정 년 일	년 월 일
⑩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 수당청구액		
⑫ 정년잔여 기간(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 산 출 내 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 : 1. 명예퇴직원 1부
2. 명예퇴직자 요진심사서(소속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확인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199
신 청 인 (인)

※ ⑭ 확 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9
(소속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 고 시

●**마포구고시제 1995-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점용허가를 처리하였기 동법 제2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1995. 7. 31
마 포 구 청 장

허가일자	상호및성명	주 소	점용장소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요금
95. 7. 20	한국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점 김 승 규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20	상암동 1537-3	고양시지역 난방열공급 을 위한 열 배관 매설	323.2m ²	95. 6. 1 ~2000. 5. 30	174,050

●**서대문구고시제 1995-39호**

-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 제1994-268호(94. 8. 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대문구고시 제 1994-49호(94. 8. 29)로 지적 승인된 서대문구 홍제동 449-1 안산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을 실시코자 서대문구공고 제1995-151호(95. 6. 30)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7. 31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나.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홍제 1동 경로당 신축
-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49-1(시설구역 외 지주)
- 사업규모
- 바닥면적: 128.52m²(연면적: 147.

96m²)

- 부지면적: 330m²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하 1층,
지상 1층)

○ 착공 및 준공 예정일: 인가일로부터
95. 8. 31까지

다. 사업 시행자: 서대문구청장
라.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시행면적 (m ²)	소유자
서대문구 홍제동 449-1	공원	18,113.9	330	서울 특별시

●**강남구고시제 1995-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를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25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5. 7. 31
강 남 구 청 장

허가 일자	점 용 위 치	점용면 적(m ²)	점용기간	점 용 료	수 허가자	
					주 소	성 명
95. 8. 1	강남구 수서동 4-1분당선	486	95. 8. 1~ 95. 12. 31	1,561,270원	강남구 청담동 49-5 신안종합건설	박 순 석

●구로구고시제 1995-4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41호(78. 7. 8)로 시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0호(78. 8. 14)로 지적승인되어 구로구고시 제 1992-80호(93. 1. 1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한 고척1동~고척국교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 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995. 7. 31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당초-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97-21~155-24간

변경-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97-21~145-224간

나. 사업종류 및 명칭: 고척1동~고척국교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8m, L=294m

라. 사업시행자: 구로구청장

마. 사업시행일: 인가일로부터 95. 12. 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변경없음)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및 이해관계인(변경없음)

●송파구고시제 1995-25호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에따른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 6. 7)로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된 송파구 관내 풍납지구의 3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 도시정비과(410-3385~7), 시민봉사실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7. 31

송파구청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지적승인 조서

지구명	구분	위치	면적(m ²)	비고
도시설계지구	풍납지구	송파구 풍납동 일대	425,643	도로추가
도시설계지구	위례성길 지구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일대	279,000	도로추가
도시설계지구	올림픽로 지구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올림픽로 주변 일대	719,900	아파트단지계획, 도로추가
도시설계지구	송파대로 지구	송파구 가락동, 송파대로 주변	385,000	도로추가

나. 관계도면: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강동구고시제 1995-3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7. 31
강 동 구 청 장

1. 사업명: 천호동 삼진, 동서울 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아파트 건설
2. 사업주체: 삼진, 동서울 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대표 신현화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 가. 위치: 강동구 천호동 288번지 4, 5호
 - 나. 대지면적: 4,977.40㎡
 - 다. 건축면적: 1,457.73㎡
 - 라. 연면적: 21,737.53㎡
 - 마. 규모: 지하 2층, 지상 8~15층 아파트(150세대) 1동 및 부대복리시설
 - 바. 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 기간: 1995. 7~1997. 5
5. 의제 처리법률: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로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6. 설계도서: 생략

◎관악구고시제 1995-3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 10. 31)로 시설결정 및 관악구고시 제2호(91. 4. 18)로 지적승인되고 관악구고시 제1995-13호(95. 5. 15)로 인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가. 변경사유: 토지조서의 정정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기타 사항은 상기 장소에 문의 바랍니다.

1995. 7. 31

관 악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관악구 봉천동 62-35~63-103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봉천동 62-35~63-103간 도로 개설공사
- 다.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B=8m, L=100m
- 라. 시행자의 성명·주소: 관악구청장, 관악구 봉천동 1570-1
- 마.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1997. 12. 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62-35	62-35	잡	343	한선근	강남구 삼성동 11 해청④ 바-503	
2	62-57	62-57	대	8	류영철	봉천동 62-21	
3	63-83	63-83	임	241	국유지(재무부)		
4	63-24	63-24	대	96	안일승, 서대문구 흥은동 342-10 (근저당권 국민은행(주) 중구 남대문로2가 9-1(영업부))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5	63-103	63-103	대	145	국유지 의 1인(이은경) 재무부 의 1인(서초구 방배동 1026-1 경남④ 1-207)		
6	63-58	63-58	대	17	임소희 봉천동 63-41 (가처분 대한민국)		
7	63-62	제 외	대	10	이은경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④ 1-207		도시계획선 지촉안됨
8	63-105	제 외	도	2	서장원 봉천동 63-48 (근저당설정 (주)부국상호신용금고 중구 남창동 46-11)		"

●성북구고시제 1995-6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67호(76. 7. 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5-17호(95. 3. 1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한 "월곡1동 84-106 가차정리공사"의 일부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토목과 920-3405~8, 건설관리과 920-3400~3).

1995. 7. 31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내용 : 소재지, 소유자 주소 및 물건의 종류 지정

나. 변경토지·물건조사 : 따로붙임.

다. 기타사항은 변경없음.

변경토지조사

변 경 전					변 경 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월곡동 84-106	대지	30	30	이용화 월곡동 84-106	하월곡동 84-106	하월곡동 84-106	대지	30	30	이용화 하월곡동 84-106	
2	84-172	대지	30	30	이용화 월곡동 84-106	84-172	대지	30	30	이용화 하월곡동 84-106		
3	86	대지	479	2	국(재무부)	86	대지	479	2	국(재무부)		

변경물건조사

변 경 전					변 경 후					
연번	소재지	물건의종류	소유자		비고 (㎡)	소재지	물건의종류	소유자		비고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월곡동 84-106	건 물	이용화 하월곡동 84-106			하월곡동 84-106	주 택	이용화 하월곡동 84-106		
2	84-171	건 물	우노준 하월곡동 84-113			84-113 84-171	주 택	우노준 84-113		양지상 건물

●성북구고시제 1995-6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호(1968. 6. 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9호(1995. 2.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미아로확장공사(접속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 성북구공고 제170호(1995. 7. 1)로 공람공고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5. 7. 31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사업내역

명 칭	위 치	규 모	비 고
미아로확장공사 (접속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 주변	폭 (B) = 22m 연장(L) = 160m	

-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 가일로부터 95. 12. 28까지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 바.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8)와 건설관리과(920-3400~3)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따로 붙임 : 토지 및 물건조서 각 1부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주소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소유자	
						성명	주소
1	돈암동 45-232	학	311	311	학교	학교법인 고명학원	
2	돈암동 45-197	학	7	7	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3	돈암동 45-195	학	19	19	학교	서울특별시	
4	돈암동 45-92	도	698	698	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	문암동 45-232	수위실	콘크리트/슬래브	8.6	수위실	학교법인 고명학원	
		학교정문	벽돌/화강석	1식	학교정문	학교법인 고명학원	
		담장	벽돌/화강석	1식	담장	학교법인 고명학원	

◎관악구고시제 1995-3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78. 4. 25)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7. 31

관악구청장

가. 사업명 : 봉천10동 41-861~45-9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지 : 관악구 봉천동 41-861 ~45-9

다. 사업개요 : 도로개설 B=6m, L=80m

라.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96. 12. 31까지

마.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아.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주소
1	봉천동 41-892	대	13	3	대지	박상무	용산구 원호2가 8-4	
2	45-5	도로	9	9	대지	하정자	봉천동 1519-7	
3	45-6	도로	19	19	대지	이민철	봉천동 36-72	
4	45-9	도로	25	25	대지	이교완	봉천동 45-4	
5	47-18	도로	49	49	대지	이경재	봉천동 47-1	

물 전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봉천동 41-659	대 문	철 문	1식	대 문	이한주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6-1217
2	41-660	주 거	슬레이트 /벽돌	15㎡	방, 부엌	안창용	봉천동 41-525
		담 장	벽 돌	24㎡	담 장	안창용	"
		화 장 실	슬레이트 /블록	1㎡	화 장 실	안창용	"
		도시가스		1식		안창용	"
		유 실 수	감나무 1 대추나무 1 포도 3	1식	유 실 수	안창용	"
		수 전		1식		안창용	"
		대 문	철 문	1식	대 문	안창용	"
3	41-5	주 거	슬레이트 /블록	15㎡	주 거	하정자	봉천동 1519-7
		주 거	슬레이트 /블록 기와/벽돌	9㎡	주 거	하정자	"
		주 거	슬레이트 /블록	15㎡	주 거	하정자	"
		대 문	철 문	1식	대 문	하정자	"
4	45-6	담 장	블 록	8.5㎡	담 장	이민철	봉천동 36-72
5	45-9	담 장	벽 돌	8㎡	담 장	이교완	봉천동 41-45 (근저당설정 서울 중구 태평 로2가 50 삼성생명보험(주) (서울서부지점))
		대 문	철 문	1식	대 문	이교완	"
		화 장 실	스래브 /블록	3㎡	화 장 실	이교완	"

●마포구고시제 1995-2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1995-20호 (95. 2. 14)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중동 79-54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7. 31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나. 공사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규모	도 시 계 획 사 함	사업기간	비 고
중동 79-54간 도로개설공사	중동 79-1 ~ 중동 57-4	B = 6M L = 140M 중 110M	서고 제182호(73. 11. 26)-시설결정 마고 제 1995-23호 (95. 6. 29)-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인가일로 부터 96. 12. 31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마포구 성산동 275-3)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조서
 마. 위치도 및 지적현황도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비치
 바.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 따로 붙임 조서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토목과 (330-2405~7), 건설관리과(330-24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번호	소 재 자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	중동	57-8	도	22	22	도		마포구	ㄴ
2	"	57-13	"	138	138	"		"	ㄷ
3	"	58-55	대	10	10	대	중동 58	장순현	
4	"	58-60	"	18	18	"	은평구 수색동 205-1573	최기영	ㄹ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5	중동	58-61	대	3	3	대	중동 58-23	장순업 외 1인	스
6	"	58-62	"	1	1	"	중동 77-28	홍사원	ㅈ
7	"	80-14	"	24	24	"	중동 80-6	조진행	ㅊ
8	"	80-10	"	8	8	도		서울특별시	ㅇ'
9	"	59- 2	건	47	47	나대지	중동 81-12	조재행	
		9필지		271㎡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 적 (㎡)		실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동	번 지			연 면 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	중동	58-54	담장	적벽돌 7.0×0.9			담장	중동 58-54	장승현
2	"	58-10	"	시멘벽돌 8×1.3	동원주택		"	북아현동 3-405	최기영
3	"	80- 3	주 택	목 조 슬레이트	118	8	평가	중동 80-6	조진행
4	"	78	담 장	시멘벽돌 11×1.6			담장	중동 78	조연화 외 108인
	"	"	철대문	6.2×1.7					
	"	"	향나무 관상수	5주 1주					
5	"	58-23	담 장	적벽돌 3×1.2			담장	은평구 응암동 61-5	장순식
			철대문	2.3×2.1					

●관악구고시제 1995-3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05호(92. 10. 6)로 시설결정 및 관악구고시 제1992-37호(92. 11. 19)로 지적승인되고 관악구공고 제 1995-82호(95. 4. 17)로 공람공고한 신림1동 412-319~신림3동 610-29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관악구고시 제 1995-24호(95. 6. 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에 의거 공람공고는 생략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나 기타 사항은 상기 장소에 문의 바랍니다.

1995. 7. 31

관악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신림1동 412-319~신림3동 610-290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신림1동 412-319~신림3동 610-290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 = 6m, L = 286m
- 라.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
- 마. 사업시행기간: 인가로부터 1997. 12. 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권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신림동 산 159-33	임	781	781	박남실	강남구 반포동 1241 반포 APT 94-102
2	신림동 산 159-40	임	246	246	박남실	강남구 반포동 1241 반포 APT 94-102
3	신림동 산 159-38	임	1,263	1,263	박남실	강남구 반포동 1241 반포 APT 94-102
4	신림동 산 159-42	임	63	63	박남실	강남구 반포동 1241 반포 APT 94-102
	계			2,353		

●성동구고시제 1995-5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1995-29호 (95. 4. 24)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성수1가동 356-2~성수2가동 375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다.

1995. 7. 31

성 동 구 청 장

- 가. 사업개요 : 변경없음
- 나.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 다.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 변경없음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연 번	소 개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목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당초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동	356-1	대	14	14	서정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동 356
	변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동	356-1	대	4	4	서정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동 356
2	당초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동	378-1	대	46	46	신성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동 378-1
	변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동	378-3	대	46	46	신선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동 378-1

구 공 고

●광진구공고제 1995-65호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일부시설변경)완료

1. 서울시고시 제339호(85. 5. 22)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허가되고 지교91121-5102(94. 12.

24)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시행 인가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 일대의 동서울종합터미널 공사에 대하여 사업완료 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57조의2 및 동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148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1995. 7. 31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명칭: 동서울종합터미널 일부시설 변경

다. 사업시행변경규모: 부대시설 용도변경

1) 총 판매시설 63㎡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2) 총 물품보관소 98.50㎡를 판매시설로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광진구 구의동 546-1 한진건설(주) 대표이사 안 용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연월일-1994. 12. 24

준공예정일-1994. 12. 31

준공기한 연장일-1995. 6. 30

준공연월일-1995. 7. 20

●성동구공고제 1995-153호

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6조제1항제3호,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시공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업 지정취소 및 시공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1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5. 7. 31

성 동 구 청 장

지정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처분사유	청문 여부	처분내역	비 고
48	대경열기	상왕십리동 12-49	곽환영	무단폐업	불참	지정취소	
85	현대종합건축설비	왕십리1동 99	김석수	무단폐업	불참	"	
55	(주)육성기전	왕십리1동 301-6'	서태식	무단폐업	불참	"	
63	남양설비	"	안인수	무단폐업	불참	"	
36	부광설비	마장동 518-13	공용주	무단폐업	불참	"	
51	동화전업(주)	행당1동 298-9	이종윤	무단폐업	불참	"	
98	제일종합설비	금호1가 571	최진화	기술요원 부 족	불참	시공정지 3개월 95. 7. 18~10.17	
81	동양설비	금호2가 1059-1	김광희	대표사망	불참	지정취소	
91	양촌설비	금호4가 548-1	정옥신	무단폐업	불참	"	
17	삼선설비	옥수1동 495-23	김정곤	무단폐업	불참	"	
49	대경설비	옥수1동 540-14	김수복	무단폐업	불참	"	
68	한성공조산업	성수1가동 13-192	박동엽	무단폐업	불참	"	

지정 번호	업 소 명	소 제 지	대표자	처분사유	첨문 여부	처분내역	비 고
38	대창설비	성수2가1동 572-6	강진석	기술요원 부 주	참석	시공정지 1개월 95. 7. 18~8.17	
6	유진실업	성수2가 281-6	유진실	무단폐업	불참	지정취소	
3	안전설비공사	성수2가3동 302-2	안동호	무단폐업	불참	"	
37	한양설비	마장동 335-4	이종무	기술요원 부 주	불참	시공정지 3개월 95. 7. 18~10.17	
8	태양설비공사	용담동 43-8		무단폐업	불참	지정취소	

●성북구공고제 1995-186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 들 공람합니다.
-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 시기 바랍니다.

1995. 7. 31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1995. 7. 21~1995. 8. 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과(920-3385~8)

다. 공람내용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분	규 도				사용 형태	연장 (m)	기 점	종 점	변 경 내 용
		등급	유별	번호	폭원					
1	기정	대로	1	55	35	일반 도로	3,550	해화동 광장	미아 삼 거리	동선동3가1~동선 동3가 259-6간 (B=35~37~41m L=290m)
	변경	대로	1	55	41	일반 도로	3,550	해화동 광장	미아 삼 거리	폭원확장
2	기정	소로	2		8	국지 도로	45	동선동4가 295-4	동선동4가 302	폭원확장
	변경	소로	2		12	국지 도로	45	동선동4가 295-4	동선동4가 302	

2) 관련도면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서초구공고제 1995-250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우면동 28 일대(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결정하기 위하여 동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5. 7. 31
서 초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1995. 7. 21~1995. 8. 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초구 도시정비과(570-6385~7번)

(1)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용도지역	지역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자연녹지지역	-	서초구 우면동 28일대	39,170	암산마을
변 경	일반주거지역	1종	"	39,170	

(2) 관계도면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관악구공고제 1995-162호
전문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물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5. 7. 31
관 악 구 청 장

양 도 인가일	양 도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95.7.19	철물 92-서울-11-47	동림건설(주)	윤도하	관악구 신림동 538-2	(주)두건	권영철	관악구 구로구 141-1

●강남구공고제 1995-18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5. 7. 31
강 남 구 청 장

양도 인가일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95.7.11	상하수도공사업 (서울82-13-48)	에림엔지니어링(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25	정영기	덕대건설(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66-6	고종욱

●동대문구공고제 1995-133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 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5. 7. 31

동대문구청장

1. 양도인가일: 1995. 7. 19
2. 업종 및 면허번호: 석공공사업 82-04-28, (주)제일석재
설비공사업 82-12-106, (주)두신공영

구분	양도자	양수자
상호	대명석재(주)	(주)제일석재
대표자	박문화	이용하
영업소재지	동대문구 신설동 102-37	충남 천안시 성정동 738-8
도급한도액	'95 : 581,870,000원	'95 : 581,870,000원
구분	양도자	양수자
상호	삼영기연(주)	(주)두신공영
대표자	윤주찬	최은하
영업소재지	동대문구 장안동 414-7	정동구 성수동2가 273-56
도급한도액	'95 : 890,220,000원	'95 : 890,222,000원

●강남구공고제 1995-19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5. 7. 31

강남구청장

인 가 일 가	양 도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1995.7.20	의정공사업 서울 89-01-16	쓰리에이 아이(주)	강남구 대치 동 983-7	김여수	(주)한국 오에이퍼 니치	양천구 신정 동 902-8	노재근

●중구공고제 1995-150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서울특별시 중구관내에서 시행한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합니다.

○ 공고기간 : 95. 8. 1~95. 8. 14

○ 공고장소 : 구보(시보)계재

2. 관계도면은 중구청 하수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5. 7. 31

중 구 청 장

공고 및 공람개요

사용개시 연 월 일	배수구역	공 사 명	사 용 지 번	합·분류 여부	비고
95.6.17	청계배수구역	남산1호터널입구 하수도공사	예장동 1-54 ~예장동 1-164	합류식	개량
95.5.24	청계배수구역	방산동 20-92번지간 하수도공사	을지로5가 20-1 ~방산동 4-45	합류식	개량
95.6.13	청계배수구역	의주로1가 19 외 6개소 하수도 공사	을지3가 296-11~296-1 광희동1가 52-1~20-8 쌍림동240~241-2 을지7가 29~30 신당6동 46-1~282-72 다동64~61	합류식	개량
	육천배수구역		의주로1가 198~189	합류식	개량
95.5.21	청계배수구역	충무로5가 55~필동 남산밀간 도로확장공사	필동3가 46-6~73-1	합류식	신설

○ 배수구역 : 중구청 하수과 비치

○ 사용용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 위치 :

중구청 하수과 비치

●관악구공고제 1995-16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40호(93. 12. 30)로 결정 및 관악구고시 제1994-48호(95. 1. 7)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1995-21호(95. 6. 8)로 지적정정고시된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5. 7. 31

관악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13-3~산 117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8m, L=184m
- 라.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
-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인가일로부터 1997. 12. 31까지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별첨 조사사.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조사
- 아. 공람장소: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 자.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토목과(880-3405~7)에 문의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 소
1	신림동 산 117-9	임	1,091	1,091	서울 중로구 관철동 21 전주이씨 화의군파종회	
2	신림동 산 117-12	임	19	19	국(기상청)	
3	신림동 산 114-15	임	6	6	김인동 서울 중구 신당동 340-53	
4	신림동 산 114-13	임	288	288	김인동 서울 중구 신당동 340-53	
5	신림동 732-7	대	15	15	김동수 신림12동 732-5 외 79명	
	계			1,419		

인사발령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발령 제388호(1995. 7. 19)
 감사2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이종만 감사
 원파견근무를 명함(95.7.20~95.8.5)
 감사2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이영호 감사
 원파견근무를 명함(95.7.20~95.8.5)
 감사2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창균 감
 사원파견근무를 명함(95.7.20~95.8.5)
 감사1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동 감
 사원파견근무를 명함(95.7.20~95.8.5)
 감사1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박경운 감
 사원파견근무를 명함(95.7.20~95.8.5)
 문화재과 지방건축주사 임경호 감사원파
 견근무를 명함(95.7.20~95.8.5)
 재개발과 지방건축주사 최석규 감사원파
 견근무를 명함(95.7.20~95.8.5)
 도시경관과 지방건축주사 최종인 감사원
 파견근무를 명함(95.7.20~95.8.5)
 주택개량과 지방건축주사보 유철중 감사
 원파견근무를 명함(95.7.20~95.8.5)
 주택개량과 지방별정6급상당 박홍기 감
 사원파견근무를 명함(95.7.20~95.8.5)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389호(1995. 7. 20)
 구로부녀복지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
 등급) 김성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휴직

발령 제390호(1995. 7. 20)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방호원(방호10등급)
 윤석복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

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정10등급)
 김승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
 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5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 변경

발령 제391호(1995. 7. 22)
 상수도사업본부(성북수도사업소) 지방수
 도토목사무관 황의석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5-46 95.6.20)
 에 의하여 95.2.21자 '감봉1월'처분을 동일
 자 '견책'으로 변경처분함

상수도사업본부(남부수도사업소) 지방수
 도토목사무관 김성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5-38 95.6.20)
 에 의하여 95.2.21자 '감봉1월'처분을 동일
 자 '견책'으로 변경처분함

상수도사업본부(남부수도사업소) 지방수
 도토목주사 강선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
 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5-45 95.6.20)에
 의하여 95.2.21자 '정직3월'처분을 동일자
 '감봉3월'로 변경처분함

상수도사업본부(남부수도사업소) 지방수
 도토목주사 강태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
 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5-37 95.6.20)에
 의하여 95.2.21자 '정직3월'처분을 동일자
 '감봉3월'로 변경처분함

상수도사업본부(강서수도사업소) 지방수
 도토목주사보 조성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5-44 95.6.20)
 에 의하여 95.2.21자 '정직3월'처분을 동일
 자 '정직1월'로 변경처분함

상수도사업본부(영등포수도사업소) 지방
 수도토목주사보 도기현 서울특별시지방공무
 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5-36 95.6.
 20)에 의하여 95.2.21자 '정직3월'처분을 동
 일자 '정직1월'로 변경처분함

상수도사업본부(강남수도사업소) 지방수
 도토목서기 변명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
 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5-35 95.6.20)에
 의하여 95.2.21자 '감봉3월'처분을 동일자
 '감봉1월'로 변경처분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수의주사 정태규 서
 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
 건 94-27 95.6.10)에 의하여 94.4.13자 '감
 봉3월'처분을 동일자 '견책'으로 변경처분함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보 김홍환 서
 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
 건 95-10 95.6.10)에 의하여 95.12.21자
 '감봉3월'처분을 동일자 '감봉2월'로 변경처
 분함

서울특별시장